

행정기관명

수신자

(경유)

제 목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명령서

귀하의 이륜자동차는 정기검사기간이 지나 정기검사를 받을 것을 통지하였으나 계속하여 정기검사를 받지 않아 「자동차관리법」 제37조제1항제3호 및 제52조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을 것을 명령하오니, 아래 명령 이행기간 이내에 가까운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에게 정기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.

소유자	성명(명칭)	생년월일(사업자등록번호)
	주소 (전화번호:)	
이륜 자동차	이륜자동차번호	차대번호
	차명	차종
	검사유효기간	부터 까지
	명령이행기간	부터 까지
※ 유의사항		
1. 이 명령서를 받고도 명령이행기간 이내에 정기검사를 받지 않으면 「자동차관리법」 제81조제22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, 같은 법 제37조제3항 전단에 따라 이륜자동차의 운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.		
2. 이 명령서를 받기 전에 정기검사를 받았거나 전출·이전·말소등록 또는 사용폐지신고 등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전화, 팩스 또는 우편 등으로 통지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.		

끝.

시장·군수·구청장

직인

기안자 직위(직급) 서명

검토자 직위(직급) 서명

결재권자 직위(직급) 서명

협조자

시행 처리과-일련번호(시행)

접수

처리과명-일련번호(접수)

우 주소

/ 홈페이지 주소

전화번호()

팩스번호()

/ 기안자의 전자우편주소

/ 공개구분